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면허의료행위 신고포상금〉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9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9.

(3) 회 부 일 : 2025. 12.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

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최대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7조의3(신고 포상금) ①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²⁾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법률 제21111호, 2025.11.11. 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이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2월 12일 시행되었음.³⁾

□ 그런데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⁴⁾ 무면허 의료행위는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2) “대학병원서 버젓이 ‘대리수술’자행…수술실 CCTV 설치 유효성 ‘논란’”, 메디코파마뉴스, 2024.9.12.

3)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2025.11.11., 일부개정]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 [시행일: 2026. 2. 12.]

4) 연합뉴스, 경찰, 방송인 불법 방문진료 의혹 ‘주사이모’ 압수수색, 2026.1.7.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를 한 자가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형량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 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어 의결되었음.⁵⁾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으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참고: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연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2015	65	23	16	389	-
2016	51	8	26	16	-
2017	34	14	9	7	1
2018	35	21	18	21	30
2019	11	12	10	10	12
2020	22	17	7	12	1
2021	39	12	8	36	57
2022	19	6	5	3	36
2023	28	17	14	12	42
2024	14	21	-	8	26
2025.6월	16	4	6	81	14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약칭)에 따른 신고제도는 상금의 지급 한도가 낮고 국민

5)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침해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삭제되었음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회의록).

인식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보건범죄단속법에서는 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상한액을 50만원으로 한정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⁶⁾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신고 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음.

「의료법」상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정 당시부터 공익침해행위로 포함되어 있음.⁷⁾

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상금 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상금의 지급액)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되, 상금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

(전략)

- 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22. 「의료급여법」
- 323. 「의료기기법」
- 3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25. 「의료법」
- 3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후략)

□ 둘째,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사특별법적 지위에 있는데,⁸⁾⁹⁾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은 신고 상금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 의료업자에 대한 신고보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의 포상금의 상한액이 더 높게 설정되는데, 법률체계 및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하 생략)

8) 이진국,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30권제1호, 2022
- 보건범죄단속법은 1960년대에 부정의료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형사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을 통해 일벌백계하기 위하여 1969년 제정되었음.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또한, 보건범죄단속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 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4가지 범주의 보건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⁰⁾ 그중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상금(포상금)의 상한을 20배로 높이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통일성·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10년간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5차례에 불과한데, 이는 입법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활용 문제인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금의 상한액은 1969년 제정 당시에 책정되어 2026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데,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2,682%라는 점,¹¹⁾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상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에 부과된 벌금액의 20% 상당액으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에게 병과하는 벌금의 상한액인 1천만원¹²⁾의 20%는 200만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 상금이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 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내용 생략)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내용 생략)

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내용 생략)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내용 생략)

11) (2020=100 기준) 1969년 CPI 약 4.227, 2025년 CPI 약 117.57

12) 병과되는 벌금의 금액 역시 1969년 제정 당시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에서 1990년 개정을 통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나, 이후 36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바, 현실화 논의가 필요함.

< 최근 10년간 보건범죄단속법 제9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사례 >

연도	신고일자	포상일자	금액
2024	2024-05-28	2024-06-18	500,000
2025	2025-08-01	2025-08-06	500,000
2025	2025-10-29	2025-10-31	140,000
2025	2025-10-27	2025-11-13	400,000
2025	2025-10-31	2025-11-19	400,000

주) '16~'23년도는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 셋째, 개정안은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7조제1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직역별 면허의 범위에 관하여 제2조 정의조항을 통해 개략적인 임무를 구분하고 있을 뿐, 직역별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제27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높일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서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¹³⁾ 이로 인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13) ▶ 신고포상금 제도는 원래 위반행위를 적발해야 할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낮추고, 과잉신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함(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5.))

▶ 부산광역시는 전문 신고꾼(파파라치)의 신고 남발 및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 저하 및 행정청의 수사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경우, 무분별한 신고 남발로 사실관계 검증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에게 최소한의 입증책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참고로 보건범죄단속법에서 가중처벌 대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은 의료법상 구성요건에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영리성)¹⁴⁾ 의료행위를 ‘업으로’(업무성)¹⁵⁾ 할 것을 추가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의 남발이 축소될 수 있는 장치가 있음.
-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도 참고할 수 있음.¹⁶⁾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의료법」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와의 관계 및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미 「보건범죄단속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포상금액을 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와 중복·운영될 우려가 있음.

14)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함(대법원 2003도2903 판결 등)

15) 반복, 계속하여 여러 번의 행위를 하거나 1회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1도 636 판결 등)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안 취지인 포상금의 지급 한도가 낮고, 국민 인식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범죄단속법」상의 지급 한도를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함.

2) 대구광역시 (수정수용)

- 무분별한 신고 남발로 사실관계 검증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신고자에게 최소한의 입증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부산광역시 (신증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 면허 범위의 해석, 기타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등 전문적 법률·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금전적 포상을 전제로 신고를 장려할 경우, 정확한 법적 판단 없이 외형적 장면이나 추정에 기초한 신고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종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업무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소위 '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별법상 산재해 있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축소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 및 처벌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대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문 수사와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건소 등 주무관청이 불필요한 민원 처리에 수사 자원을 낭비할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의 신고보다는 전문 신고 행위의 양산, 과장·오인 신고 증가 등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대한의사협회 (수정수용)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이 비의료인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벗어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 제27조 위반을 광범위하게 신고 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마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신고 포상금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을 비의료인에 의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대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검토 및 자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대한한 의사협회 (수정수용)

- ☐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6)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정수용)

- ☐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보다는 포상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근거 규정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신중검토)

- ☐ 포상금 신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고 대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충분히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액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